

대구대학교

LICENSE
AGREEMENT

 한국리더십센터

라이선스 계약서

프랭클린코비

본 계약은 미국 유타(Utah)주 법인인 프랭클린코비사(이하 "FCC")의 한국대리인/ (주)한국리더십센터(이하 "KLC")와 본사의 주소가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대학교(이하 "LICENSEE")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전 문

- A. FCC/KLC는 직원과 리더십 연수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이라는 비디오를 활용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 B. LICENSEE는 FCC/KLC가 개발한 비디오 활용의 연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한된 라이선스 취득을 원하고 이 라이선스를 사용할 때 FCC/KLC로부터 교육과 지원이 제공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본 계약서에 내포된 서약과 약속의 이행 및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협력을 위하여 FCC/KLC와 LICENSEE는 다음과 같이 조항별로 협약한다.

협정 조항

제 1 조 : 정 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될 때 아래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1.1 "프로그램 참가 자격자(Authorized Program Participant)"라 함은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 (Seven Habits Training Program)에 참여할 그 당시 LICENSEE의 교수, 학생, 임직원 그리고 그 임직원의 직계 가족을 의미한다.
 - 1.2 "자격증을 받은 퍼실리테이터(Certified Facilitator)"라 함은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FCC/KLC에 의해서 교육받고 자격을 인정 받은 LICENSEE의 교수, 직원을 말한다.
 - 1.3 "증보본(Enhancement)"이라 함은 FCC/KLC가 만든 자료나 프로그램에 대해 LICENSEE가 개정, 편집, 수정, 추가, 갱신 또는 기타 개선을 시킨 부분을 말한다. 모든 증보본들은 FCC/KL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보본에 대한 저작권은 FCC/KLC가 갖는다. 대구대학교와 관련된 사례, 독창성이 확실한 원본, 소유권이 없는 일화, 이야기들과 일반적인 FCC/KLC 개념을 본뜬 예화 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증보본에 해당되지 않는다.
 - 1.4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이라 함은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격자로서 "프로그램 참가자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LICENSEE가 지명한 교수, 직원들에게 실시하는 FCC/KLC의 교육을 의미한다.
 - 1.5 "사용이 허가된 퍼실리테이터용 자료(Licences Facilitator Materials)"라함은 7가지 습관 연수를 목적으로 본 계약에 의거 FCC/KLC가 LICENSEE에게 제공 또는 대여해 준 다음과 같은 저작권이 있는 교육자료를 의미한다.
 - (a) FCC/KLC의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일러스트레이션, 비디오 스크립트
 - (b) FCC/KLC의 퍼실리테이터 매뉴얼
 - (c) FCC/KLC의 교육 실행 매뉴얼, 교육실행 안내 책자
 - (d) FCC/KLC의 CD
- "사용이 허가된 퍼실리테이터용 자료"에는 FCC/KLC가 LICENSEE에게 제공한 참가자 매뉴얼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 참가자용 자료는 "사용이 허가된 퍼실리테이터용 자료들(Licensed Facilitator Materials)정의"에서 명백히 제외된다.
- 1.6 "참가자용 자료(Participant Materials)"라 함은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참가 자격자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FCC/KLC에 의해 LICENSEE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는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료 즉, 매뉴얼, 플래너, 프로파일 일체를 말한다.
 - 1.7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Seven Habits Training Program)"이라 함은 교수, 직원 연수와

리더십 개발교육에 제공할 목적으로 FCC/KLC에 의해 개발된 비디오를 활용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 2 조 : 제한된 라이선스의 제공

- 2.1 본 계약서의 조항과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FCC/KLC는 LICENSEE에게 제한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LICENSEE가 프로그램 참가 자격자에게 교수, 직원 연수와 리더십 개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과 사용이 허가된 퍼실리테이터용 자료(Licensed Facilitator Materials)의 사용을 허가한다.
- 2.2 LICENSEE는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이나 다른 FCC/KLC가 개발한 세미나들 중에서 프로그램 참가 자격자에게 비디오를 활용하지 않는 연수를 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본 계약상 허가되지 않는다.

제 3 조 : FCC/KLC에 의한 교육과 지원 제공

- 3.1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FCC/KLC는 LICENSEE에게 사용이 허가된 퍼실리테이터용 자료중 본 계약서의 뒷부분에 첨부된 "SCHEDULE A"에 명시된 자료들을 대여한다.
- 3.2 FCC/KLC는 LICENSEE가 지명한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받을 사람을 위해 5일 이내의 교육을 실시한다. 퍼실리테이터들은 FCC/KLC에 의해 인정된 LICENSEE의 교수, 직원들이어야 하며 LICENSEE의 컨설팅 요원이나 비고용 대리인은 자격이 없다. 위에서 말한 교수, 직원들은 "TRAIN THE TRAINER" 프로그램에 등록함과 동시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교육 퍼실리테이터 합의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 뒷면에 첨부된 "SCHEDULE B"는 합의서의 견본이다. 교육은 FCC/KLC의 연수장소 또는 FCC/KLC와 LICENSEE 상호간에 결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3.3 FCC/KLC는 LICENSEE의 요청에 따라 퍼실리테이터로 추가된 LICENSEE의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을 5일간 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3조 3항에 따라 제공되는 퍼실리테이터 교육의 비용은 그러한 종류의 교육에 대한 FCC/KLC의 통상가격에 따른다..
- 3.4 LICENSEE의 요청에 따라 FCC/KLC는 위의 3조 2항과 3항에 따라 제공되는 퍼실리테이터 교육 뿐만 아니라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LICENSEE가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만약 그러한 지원에 비용이 든다면 양자 사이의 사전협정에 따른다.

제 4 조 : LICENSEE의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 사용

- 4.1 제4조에 포함되어 있는 제한사항들은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의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사용 자격자들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신용과 명성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의 최고수준이 유지되고 피교육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FCC/KLC의 사업적 이익이 보장될 수 있음을 LICENSEE는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LICENSEE는 여기 4조에서

설명된 제한 사항들은 앞서 말한 FCC/KLC의 사업적 이익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합당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4.2 LICENSEE는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참가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수, 직원연수와 리더십 개발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LICENSEE는 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참가 자격자가 아닌 어떤 개인이나 조직, 단체에게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4.3 FCC/KLC가 사전에 문서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LICENSEE는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을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으로 사용할 것임에 동의한다. LICENSEE는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이나 그 일부를 FCC/KLC에 의해 제작되지 않은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자료와 함께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

4.4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참가 자격자를 교육시킬 때, LICENSEE는 FCC/KLC로부터 참가자용 자료를 구입하여 프로그램 참가 자격자 각 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에 동의한다. LICENSEE는 두 사람 이상의 프로그램 참가자격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같은 참가자용 자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요구하거나 고무시키지 않기로 동의한다.

4.5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참가 자격자들을 교육시킬 때 LICENSEE는 그러한 교육이 3조 2항과 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FCC/KLC로부터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받은 퍼실리테이터에 의해서만 실시하기로 동의한다.

4.6 LICENSEE는 FCC/KLC의 동의 없이 "사용이 허가된 퍼실리테이터용 자료"나 또는 참가자용 자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복사를 조장하지 않는다. LICENSEE는 "사용이 허가된 퍼실리테이터용 자료"나 참가자용 자료의 추가 필요 수량은 오직 FCC/KLC로부터 FCC/KLC의 당시 시가로 구입할 것임을 동의한다.

4.7 "사용이 허가된 퍼실리테이터용 자료"와 참가자용 자료는 FCC/KLC에 소유권과 저작권이 있고 FCC/KLC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LICENSEE에게 사용권이 있다. LICENSEE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서 "사용이 허가된 퍼실리테이터용 자료"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LICENSEE는 "사용이 허가된 퍼실리테이터용 자료"들을 타인에게 양도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LICENSEE가 "사용이 허가된 퍼실리테이터용 자료"들과 참가자용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과 조건들의 제한을 받는다. LICENSEE는 "사용이 허가된 퍼실리테이터용 자료"나, 참가자용 자료, 기타 FCC/KLC가 제공한 자료들이나 그 일부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제3자나 제3의 회사에 주거나 팔거나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사용이 허가된 퍼실리테이터용 자료"나 참가자용 자료의 무단 사용은 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며 또한 한국 및 미국 저작권법 위반이다.

4.8 LICENSEE는 계약기간동안 LICENSEE가 개발한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과 참가자용 자료 및 "사용이 허가된 퍼실리테이터용 자료"들의 증보본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는 상호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참가자용 자료나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사용이 허가된 퍼실리테이터용 자료"의 일부분이 되어 FCC/KLC가 소유권을 갖게 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이 계약서의 조항과 조건들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LICENSEE는 7가지 습관 연수 프

로그람에서 학습되는 실제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할 목적으로 자격증을 받은 퍼실리테이터가 사용하는 실례들, 대구대학교와 관련된 사례, 독립적인 내용, 소유권이 없으며 보조적인 원작의 내용, 제 3자의 예화나 이야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적인 예화나 이야기, 실례들은 4조 8항에서 말하는 증보본(Enhancement)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5 조 : 라이선스에 대한 지불

- 5.1 본 계약의 체결과 함께 LICENSEE는 본 계약서의 뒷부분에 첨부된 "SCHEDULE A"에 설명된 교육 자료 대금과 처음 한 번만 지불하는 라이선스 수수료{₩900,000(VAT별도)}의 합계금액에 관한 청구서를 FCC/KLC로 부터 받는다. LICENSEE는 청구 금액 전부를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SCHEDULE A"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LICENSEE에 의해 추가로 주문되거나 요청 받은 교육자료들의 대금은 이 라이선스 수수료의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SCHEDULE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교육자료와 참가자용 자료들은 LICENSEE에 의해 서면으로 주문된다. FCC/KLC는 그러한 자료들을 당시의 시가로 제공한다.
- 5.2 LICENSEE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LICENSEE에게 제공되는 모든 교육자료를 서울, 경기 지역 이외의 지방으로 운송할 때 FCC/KLC가 부담한 운송비용 전액을 FCC/KLC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LICENSEE가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의거해서 주문된 모든 교육자료들은 보통의 육상 수송에 의해 운송될 것이다.

제 6 조 : 배 상

- 6.1 본 계약에 의거 FCC/KLC가 LICENSEE에게 제공한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이나 다른 교육 자료들이 제3자의 저작권이나 다른 소유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FCC/KLC는 그러한 침해로 인하여 LICENSEE가 입은 손해비용과 변호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는 데 동의한다. 단 아래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a) LICENSEE는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 내용을 서면으로 FCC/KLC에 즉각 통보한다.
- (b) FCC/KLC는 배상청구에 대한 화해와 타협안을 포함한 변호와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 6.2 단 FCC/KLC는 본 계약서에 의거해 LICENSEE에게 제공된 7가지 습관 연수 프로그램이나 다른 교육자료를 무단으로 사용, 배포, 증보, 수정, 또는 개정한 것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LICENSEE에 대해 위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 조 : 유한 보증

- 7.1 FCC/KLC는 본 계약에 의해 LICENSEE에게 대여된 SCHEDULE A의 자료들을 납품한 이후 90일 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 품질을 보증한다.
- 7.2 "SCHEDULE A"의 자료가 위의 7조 1항의 보증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LICENSEE는 결함 있는 자료를 FCC/KLC로부터 납품 받은 후 120일 이내에 FCC/KLC로 돌려보내야 하며 LICENSEE는 FCC/KLC로 하여금 그러한 결함 있는 자료를 반송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ICENSEE는 FCC/KLC로 보내는 결함 있는 자료들에 대한 반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돌려보내는 자료들을 운송하는데 보험을 들거나 파손과 분실의 위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7.3 "SCHEDULE A"의 자료가 7조 1항의 보증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7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 LICENSEE가 30일 이내에 FCC/KLC로 보냈을 경우 FCC/KLC는 결함 있는 자료들에 대한 대치 품을 LICENSEE에게 무료로 보내준다.

7.4 무단 사용, 오용, 사고, 도둑맞음 또는 정상적 마모로 인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에 대한 결함,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보증은 적용되지 않으며 FCC/KLC는 책임 지지 않는다.

제 8 조 : 계약기간과 종료

8.1 본 계약은 계약서에 양자가 함께 서명 날인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효력종료 후 양자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차수에 관계없이 연장할 수 있다.

8.2 LICENSEE는 아래의 제 9 조에 명시된 주소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 만약 LICENSEE가 위의 3조 1항에 명시된 모든 교육자료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해약하면 FCC/KLC는 LICENSEE가 반환한 "SCHEDULE A"의 자료, 그리고 본 계약서에 의해 FCC/KLC가 LICENSEE에게 제공한 다른 모든 교육 자료들의 비용으로 제 5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LICENSEE가 지불한 모든 금액을 환불한다.

8.3 만약 LICENSEE가 본 계약서의 실질적인 조항과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하면 FCC/KLC는 동 조건의 시정 또는 이행을 통지하고 LICENSEE가 동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기간 종료일에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8.4 LICENSEE는 계약일로부터 1년 안에 라이선스 교육이 1회 이상 실시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자동해지가 된다. 단, KLC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5 어떤 이유에서든지 본 계약이 종료되면 LICENSEE는 2주내에 FCC/KLC에게 모든 "사용이 허가된 퍼실리테이터용 자료"들과 배포되지 않은 참가자용 자료, 그리고 다른 모든 프린트물, 동영상 자료, 복사본 또는 증보본들을 돌려보내야 하고 LICENSEE가 최선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파악된 여러 형태의 FCC/KLC 관련 각종 복사본 또는 수정본을 포함한 모든 "사용이 허가된 퍼실리테이터용 자료"들을 FCC/KLC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명시한 서면 확인서를 FCC/KLC에 보내야 한다. 단 FCC/KLC는 계약종료직전에 제공된 1차분의 배포되지 않은 "참가자용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 당시의 시가로 환불한다.

제 9 조 : 통지 요령

9.1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통지는 우편요금이 지불된 등기 우편이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우송되었을 경우에만 완벽하게 통보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차후에 양자의 서면통보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면 통보를 목적으로 한 양자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FCC/KLC의 경우 : Franklin Covey Company
2200 West Parkway Boulevard
Salt Lake City, UT 84119 U.S.A.

or

한국 리더십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4번지 로즈데일빌딩 8층

LICENSEE의 경우 : 대구대학교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제 10 조 : 양자의 관계

10.1 FCC/KLC와 LICENSEE는 본 계약서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별개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독립된 단체들이고, 각자는 이 계약상의 각자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경비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FCC/KLC와 LICENSEE 그리고 양자의 어떤 대리인 또는 고용인들도 본 계약서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이 계약서에서는 어떤 쪽도 다른 한쪽을 조종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조항은 하나도 없다. 이 계약에서 어떤 쪽도 어떤 약속을 하거나 보장을 해주거나 대표자의 입장을 취할 권리나 권위는 없으며 또한 상대방을 대신 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나 불명예를 가져오는 표현 또는 인용과 어떤 종류의 의무나 책임을 취하고 만들고 일으킬 권리나 권위는 없다.

제 11 조 : 기타사항

11.1 본 계약서의 각 조항 또는 부수 조항들에 선행하는 표제들은 단지 편의를 위한 것이며 계약서에 있는 어떤 조항의 구성 또는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2 본 계약서 상에 있는 어떤 조항의 무효성과 무강제성은 계약서 상에 있는 다른 어떤 조항의 유효성과 실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각각의 조항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11.3 본 계약은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 LICENSEE는 만약 본 계약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도움을 구해야 한다. 위의 제 5 조에서 명시된 지불을 함으로써 LICENSEE는 이 계약서를 읽었고 계약의 조건과 조항을 이행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1.4 본 계약서는 LICENSEE와 FCC/KLC사이의 협약에 의한 완전하고 유일한 공문이며 구두 상이건 서면 상이건 간에 모든 제안, 사전동의, 이해들과 이 계약의 여러 사항들과 관련된 다른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우선한다.

11.5 본 계약서는 본 계약의 양측에 의한 서면 통지방법에 의해서만 수정되거나 어떤 조항이 철회될 수 있다. 본 계약서에 적힌 어떤 조항의 철회는 유사하건 그렇지 않던 간에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의 철회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러한 철회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계속적인 철회상태로 간주되지 않는다.

11.6 양측이 이 계약서의 조항 중 어떤 것을 이행시키기 위해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소송에서 승소한 측은 법정 비용과 합당한 변호사 수수료, 그리고 기타 소송에서 발생된 각종 경비와 비용을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

11.7 본 계약서의 유효성과 해석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며 재판의 관할권은 LICENSEE의 주소지로 한다.



양자는 2004 년 9월 24일 부로 본 계약에 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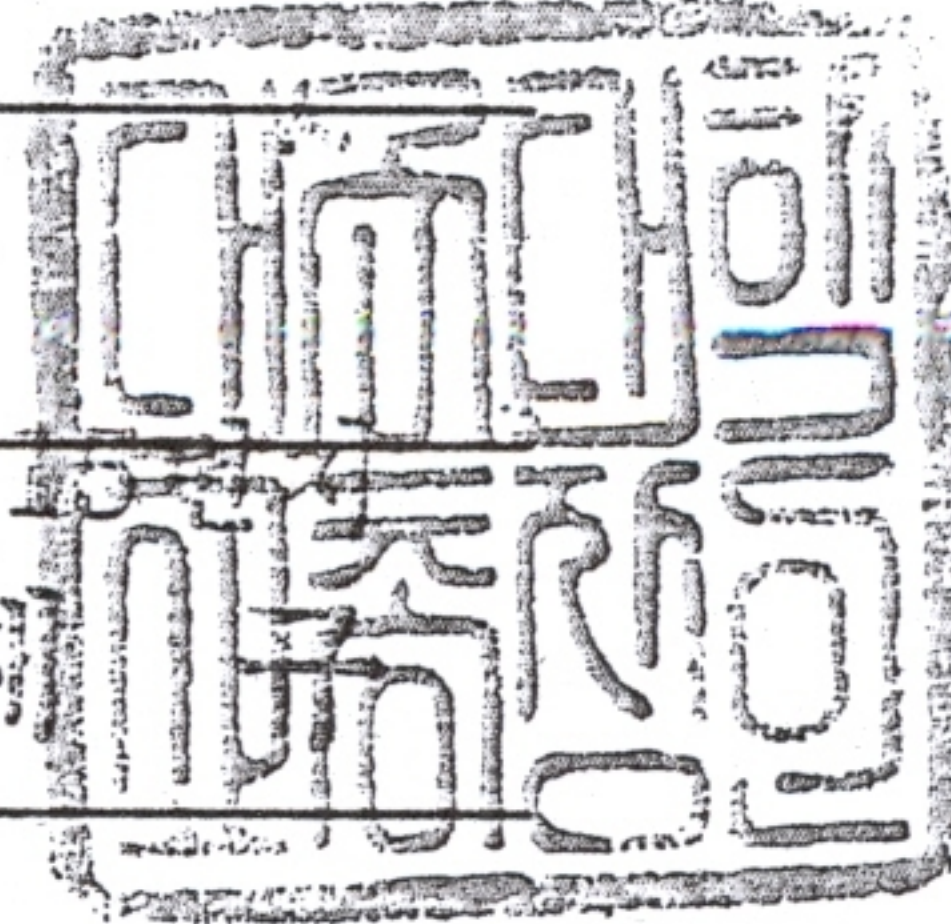
LICENSEE : 대구대학교

By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Signature _____



정복 김근기 권광을 대리
대구대학교 총장 이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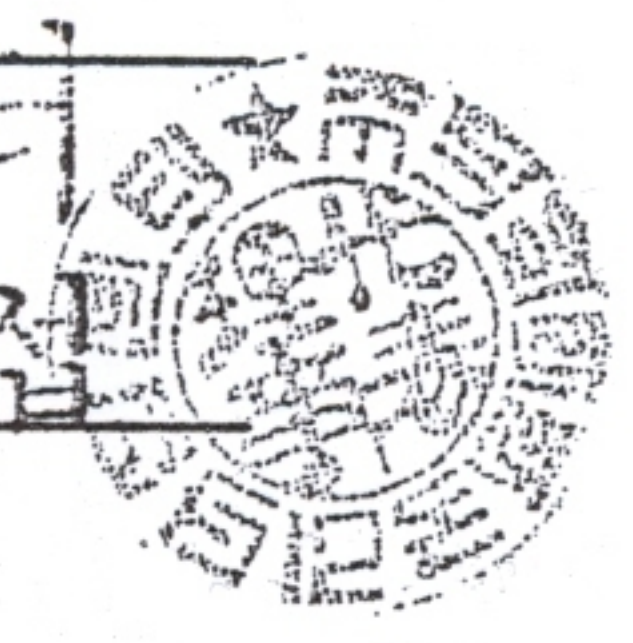
프랭클린코비사 한국 대리인 / 한국리더십센터 :

By _____

Title _____

Date _____

Signature _____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4번지 모즈데일B/D3층

(주) 한국리더십센터

대표이사 기 경 섭

